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중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963
----------	-------

발의연월일 : 2025. 8. 4.

발 의 자 : 백중헌 · 서천호 · 박충권

정성국 · 최보운 · 김재섭

김용태 · 고동진 · 강대식

이헌승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르면 위생용품을 소분(완제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재포장)만 하여 유통·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샴푸, 섬유유연제 등과 같은 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덜어가는 리필형 매장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도 위생용품제조업의 행위로 간주되어 영업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므로,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가 비교적 낮은 수준의 규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소분업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신설하여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조, 제3조, 제7조).

또한, 회수 대상인 위생용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회수 초기단계부터 영업자에 공표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회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한 처분 감면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회수·폐기제도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6조, 제 23조).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위생용품소분업”이란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용품 완제품을 소분하는 영업을 말한다.

6.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이란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용품의 완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나누어 덜어서 별도의 포장을 하지 않고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최종소비자가 직접 나누어 덜어가도록 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을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소분업 또는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하는 영업자”를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로 한다.

제1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해당 위생용품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폐기한”을 “회수·폐기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생용품소분업의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를 하고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던 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위생용품소분업의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를 한 자가 위생용품소분업만을 하기 위하여 위생용품제조업을 폐업하고 위생용품소분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호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u>“위생용품소분업”이란 총리 령으로 정하는 위생용품 완제 품을 소분하는 영업을 말한 다.</u>
<u><신 설></u>	6. <u>“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 이란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 용품의 완제품을 소비자가 원 하는 만큼 나누어 덜어서 별 도의 포장을 하지 않고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최 종소비자가 직접 나누어 덜어 가도록 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u>
제3조(영업의 신고) ① <u>위생용품 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u> 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 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 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3조(영업의 신고) ① <u>위생용품 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 생용품소분업 또는 위생용품소 비자리필판매업</u> ----- ----- ----- -----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생 략)

제7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실적보고) ① (생 략)

②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용품을 생산한 실적, 위생처리한 실적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폐기처분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실적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

-----.

제16조(폐기처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해당 위생용품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행

④ ~ ⑥ (생 략) 제2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 식품 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 의 명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 다. 1.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을 압류하거나 <u>폐기한 경우</u> 2. (생 략) <u><신 설></u>	<u>정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u>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 제2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 ----- ----- ----- ----- ----- -----. 1. ----- ----- <u>회수·폐기한 -----</u> 2. (현행과 같음) <u>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회수계 획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의 공 표를 명할 수 있다.</u>
---	---